

##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9. 4. ~ 9. 9.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현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255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이현재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정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256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서정진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읍·면·동 청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 및 민주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 복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장소에 읍·면·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12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2. “예비후보지”란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후보지”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최종입지”란 “후보지”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청사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역구 시의원
2. 읍·면·동 주민대표 5명 이내
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제9조의 비밀유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읍·면·동 총무팀장이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는 회의에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 읍·면·동장은 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79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0.

김영진 의원

발 의 자 : 김병권 의원

나안수 의원

유영갑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 제10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1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5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제정이유

-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정여건에 따른 여유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기금) 간의 유휴자금을 적기 활용하고 재난상황 등 유사시 적립재원을 집행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공포 '20. 6. 9.)

## 2. 주요내용

### ○ 설치 목적(안 제1조)

-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원 적립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

### ○ 재원 및 운용사항(안 제2조~제4조)

- 계정의 구분 및 재원

- 통합계정 : 예수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기금 운용 수익금 등
- 재정안정화계정 :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초과분(110% 초과시 10% 이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계정의 용도

- 통합계정 : 타 회계·기금 예수·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 재정안정화계정 :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등 유사시 활용

### ○ 심의회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 심의사항

-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 성 : 14명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호선), 국장급 공무원(4), 시의원(3),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등(6)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화안정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생략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하생략)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5401(2020. 7. 30.)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기획예산실-10219(2020. 7. 28.)
- 법제부서 공고필 : 생략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상환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운용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운용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명 ‘지방옴부즈만’의 구성·운영
- 제3자(민간인)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등 민원인의 권리구제 강화

##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관할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옴부즈만 위촉, 임무, 결격사유, 독립성 및 신분 보장, 겸직금지, 비밀유지 등의 의무 및 자문기구 설치근거 등 규정(안 제5조~제10조)
- 고충민원 신청, 조사, 조사방법, 통보·이송, 합의·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결정 및 처리결과의 통지, 재심의,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제24조)
-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등 규정(안 제25조~제27조)
- 사무국 설치, 운영 지원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제30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32조~제38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1. ~ 7.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29. (여성가족과-1299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6. 19. (감사실-525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30. (기획예산실-885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 (순천시 공고 제2020-1434호)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또는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읍부즈만”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읍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할)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및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관할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
2.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2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비상근 읍부즈만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대표읍부즈만 1명, 부읍부즈만 1명을 두되,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 중에서 호선하고, 부읍부즈만은 대표읍부즈만이 지정한다.

③ 대표읍부즈만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읍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른 재적위원수 계산 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읍부즈만은 제외한다.

⑧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읍부즈만 위촉 등) ① 시장은 지역 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의 협회나 지역 대학,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읍부즈만으로 추천받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읍부즈만을 위촉한다.

③ 읍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읍부즈만이 꺼워뵎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읍부즈만을 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읍부즈만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읍부즈만의 임무)**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의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4. 고충민원 조사 후 시장 또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서 제출
5. 주요 공공사업의 계약 및 이행, 인사채용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참관 및 내부감사 참여 등
6.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 중 발견된 부패 관련 사안의 조사·처리 요구
7. 부패방지 또는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의견제시, 건의·요구
8.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정책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9. 읍부즈만이 조사한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그 처리결과, 이행실태 및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0.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증진
11.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읍부즈만 운영성과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제7조(읍부즈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읍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③ 시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읍부즈만을 해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읍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읍부즈만의 제척, 회피 또는 기피 등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기구)**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순천시민 누구든지(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시장, 시의회 의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고충민원 조사)** ① 시장, 시의회 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해 ombudsman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ombudsman을 지정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고충민원 서류를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ombudsman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고충민원의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ombudsman은 제13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소속 직원 및 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시 관할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 번역, 녹취록 작성 또는 자문기구나 전문가(협회를 포함한다)에게 자문 등의 의뢰
- ② 읍부즈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의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한 고충민원의 통보)** ① 읍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읍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소속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의견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등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 제28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감사실 내 읍부즈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직원이 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읍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업무수행 및 사무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읍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읍부즈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사례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읍부즈만의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읍부즈만의 업무수행 및 사무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집행에 관한 기준은 다른 순천시의 조례나 규칙 또는 각종 회계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읍부즈만의 업무수행 및 사무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명, ‘지방읍부즈만’ 구성·운영
- 제3자(민간인)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등 민원인의 권리구제 강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0,000	-1,000	-4,000	-5,000	-5,000	-5,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0,000	1,000	4,000	5,000	5,000	5,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0,000	1,000	4,000	5,000	5,000	5,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0,000	1,000	4,000	5,000	5,000	5,000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 유네스코의 도시 전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대책 강화 필요
- 산지 불법행위(형질변경 등)의 경우 실질적 원상회복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됨. 산지 불법 개발행위를 차단하는데 공무원들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참여 및 불법 개발행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필요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 신고 또는 고발로 거두어들이는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 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 : 건당 30, 50만원(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
    - ※ 100㎡ 미만의 분묘, 장사시설 등 소규모 생활형 불법행위 등은 지급 제외
- 부서별 임무(안 제9조)
  -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고, 산림행정부서는 신고사건의 조사처리 및 처분사항의 기록·관리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50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30. ~ 7.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16.(여성가족과-1217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6. 11.(감사실-495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2.(기획예산실-842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순천시 공고 제2020-1434호)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하 “신고”라 한다)을 한 자에게 「산림보호법」 제48조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림(국유림은 제외)의 산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시의 산림행정부서(이하 “산림행정부서”라 한다) 또는 시의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한 순천시민에게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13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지급사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로 벌금, 몰수(추징) 또는 부정 임산물의 압수 후 매각이 확정된 경우
2.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신고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제4조(지급금액 및 한도)** ①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시 산림과 소속 근로자와 순천시산림조합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경우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나 감사,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인지 등을 통하여 이미 단속업무를 검토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부정, 부당하게 공모하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또는 포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 밖에 100㎡ 미만의 분묘, 장사시설 등 소규모 생활형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산림행정부서로 하여금 그 사건에 관한 처분내용을 조회하게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청기한)**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연도 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다.

**제8조(환수)** ① 감사부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별 임무)** ①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산림행정부서에 이송한다.

② 산림행정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체조사, 신고, 언론보도, 송부, 이첩 등의 인지경위, 조사·처리 사실과 최종적인 행정·형사처분 결과 등을 지체 없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처분사항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산림행정부서의 위반행위 처리내용 및 기록·관리 상황을 수시 조회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는 산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처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한 청탁 내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신고 포상금 지급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제4조제1항 관련)

1.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경우

가.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 「산림보호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거두어들이는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예산의 편성 범위 내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2.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경우

가.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0만원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0만원

나.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예산의 편성 범위 내 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지급

3. 위 1, 2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 범위 내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지급

#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에 따른 산지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

##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에 따른 재정상 수입증대 효과 기대보다 자연 환경 보전, 도시전체의 정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 특히 산림의 경우 생활공간으로써 지위, 나이, 소득,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공평한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적 가치 창출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8,000	-3,000	-5,000	-5,000	-7,000	-8,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8,000	3,000	5,000	5,000	7,000	8,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8,000	3,000	5,000	5,000	7,000	8,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8,000	3,000	5,000	5,000	7,000	8,000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등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 나주시, 화순군 시행

## 2. 주요내용

-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
  - 시 소속 공무원이나 순천시의회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수당지급 제외
- 시의원은 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15. ~ 2020. 7. 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3.(여성가족과-112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5. 27.(기획예산실-71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15.(순천시 공고 제2020-1294호)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실비보상” 을 “수당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순천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 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li> <li>2. 순천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li> </ol> <p>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회의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개정이유

-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반영(행정안전부, 2020년 5월 배포)
-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비례성 강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기능 명확화(안 제5조)
-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안 제2조, 제7조, 제23조)
  - 주민총회 참여 자격 확대(안 제2조)
  - 외국인 주민 참여 개방 등 위원 참여 자격 확대(안 제7조제1항)
  -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8조, 제12조, 제16조)
  - 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주민자치회 운영 감사 결과 공개 확대(안 제12조)
  -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1항)
- 기타 개정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의무교육 이수 시간 확대(안 제9조제2항)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 홍보 근거 규정 명시(안 제9조제9항)
  - 주민자치회 사무 책임자 호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 회장 및 위원 연임 규정 변경(안 제10조제5항 및 제20조)
  - 기타 불명확한 문구 개정, 조항 순서 변경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5. 관련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15. ~ 8. 5.)결과 : 의견 제출자 있음

- 제7조(위원의 자격) 제1항제2호 :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을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 문구 수정

○ 자치혁신과 검토 결과 : 수용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를 표현하는 ‘소재지’ 로 변경함이 적정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7. 10.(여성가족과-137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7. 1. (자치혁신과-890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7. 20.(기획예산실-98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5.(순천시 공고2020-1479호)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순천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4.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 : 2명 이내(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 2명 이내(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결위 발생 시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

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원의 60 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동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 사업장,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 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선정, 추천,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께위 시 2개월 이내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장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장,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공공성 확보
3. 순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신 계승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4.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 중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연임은 제9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되, 한번만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 기간이 만료 된 위원의 경우 제 9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 안 제16조(주민총회) : 연 1회 이상 개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정 상정
- 안 제17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마을계획안 수립
- 안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으로 인한 예산 수반
  -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사무관리비 예산 증가)
  -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수립 예산(보조금 예산 수반)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880,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세입(a)						
세출(b)	1,880,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880,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1,880,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376,000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개정이유

-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공모 실시하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노래 신규 제정
-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통해 순천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역동하는 새로운 순천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제2조(내용) 【별표】 개정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30. ~ 2020. 7. 19.)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7. 23.(여성가족과-14926)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3.(기획예산실-84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30.(순천시 공고 제2020-1379호)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순천 시민의 노래

작사.곡 김인주

새 천 년 새 시작\_ 세 계 로 나 가 는\_  
빛 나 는 오 늘 과\_ 회 망 찬 내 일 이\_

평 화 로 문 이 땅 에 - 자 연 이 합 께 하 고\_  
마 주 잡 은 두 손 에 - 열 정 은 하 나 되 고\_  
갈 생 대 받 이 노 을 진\_ 풍 정 경 원 에 담 겨 진\_  
생 명 이 숨 쉬 는\_ 정 원 에 담 겨 진\_

하 늘 이 사 랑 한 귀 한 땅 순 천  
하 늘 이 사 랑 한 귀 한 땅 순 천

전 통 과 역 사 가 승 념 쉬 는 아 름 다운  
민 화 와 교 육 이 승 념 치 는 아 름 다운

순 천 만\_ 물 증 기 를 타 고\_  
영 화 산\_ 산 증 기 를 타 고\_  
우 리 의 꿈 들 이\_ 이 에 원 한 다  
우 리 의 꿈 들 이\_ 이 에 원 한 다

희 망 찬 꿈 과 함 께 간 다\_ 알 알 라  
희 망 찬 꿈 과 함 께 간 다\_ 알 알 라

살 기 줄 은 도 시\_ 꿈 이 있 는 도 시\_  
살 기 줄 은 도 시\_ 꿈 이 있 는 도 시\_

함 께 가 는 도 - 시 아\_ 순 천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58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의자 : 김병권 의원, 김미연 의원  
이현재 의원, 김영진 의원  
나안수 의원, 이영란 의원  
유영갑 의원

## 1. 제정이유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위원회 기능 (안 제1조 ~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해촉, 임기 (안 제3조 ~ 제5조)
- 다. 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라. 운영지원 및 수당 (안 제7조 ~ 제8조)
- 마. 준용 (안 제10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0만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및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고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2. 관계 기관의 교류, 협력, 홍보 및 지원활동
3. 의과대학 유치 관련 전략기획, 용역, 토론회 등 세부추진 사항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시 까지 효력을 가진다.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76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김병권 의원

남정옥 의원

나안수 의원

## 1. 제정이유

- 순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  
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시행계획. (안 제4조)
-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안 제5조)
- 마. 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안 제6조)
- 바. 유기질비료 품질개선. (안 제7조)
- 사. 시행규칙. (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나. 타 지자체 입법례 : 해당없음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
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 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77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0.

나안수 의원

이복남 의원

발의자 : 김병권 의원

남정옥 의원

김영진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 서예교육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5조 ~ 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7조)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282호
----------	--------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김병권 의원, 이현재 의원  
나안수 의원

## 1.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 2)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대비·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2(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u>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대비·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 관련법령 등 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소상공인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

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21. 6. 10.] 제3조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 2019. 12.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08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지역경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7.>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04. 18.>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용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6. 11. 15.>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5.>

**제9조(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 및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7.>

②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7.>

③ 시장은 타지역에서 순천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 12. 17.]<개정 2018. 12. 17.>

**제10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04. 18.]

**제12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04. 18.]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본조 신설 2016. 11. 15. ] [제11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본조 신설 2016. 11. 15. ] [제12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 신설 2016. 11. 15. ] [제13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조 신설 2016. 11. 15. ] [제14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6. 11. 15.] [제15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6. 11. 15.] [제16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1. 15.] [제17조에서 이동 2019. 04. 18.]

**제20조(시행규칙)**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04. 18.]

부칙<조례 제1636호, 2016.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699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941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990호, 2019. 0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2081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제정이유

- 문화의 거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민들의 문화 향수증진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범위 및 사업(안 제1조~제4조)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시행규칙 제정 근거(안 제17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30. ~ 7. 20.) 결과 : 의견제출자 있음
  - 제5조(개관및휴관)제1항제1호 : 운영시간 변경(10:00~19:00)
  - 제5조(개관및휴관)제2항제2호 : 정기휴관일 변경(월요일)
  - [별표2]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 한옥글방 사용료 감액 및 야간(18:00~22:00) 항목 삭제

○ 문화예술과 검토 결과 : 수용

- 생활문화시설 운영의 취지 및 현행 운영시간, 시설 근무자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조정
- 순천시 타 생활문화시설 사용료와 형평성 감안하여 한옥글방 사용료 조정

**【수용에 따른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u>1. 평 일 : 10:00~22:00</u></p> <p><u>2. 토요일 : 10:00~18:00</u></p> <p>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1. 법정 공휴일</p> <p><u>2. 일요일</u></p>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u>1. 평일 : 10:00~19:00</u></p> <p><u>2. 주말 : 10:00~18:00</u></p> <p>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1. 법정 공휴일</p> <p><u>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u></p>
<p>[별표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p>	<p>[별표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p>

조 례 안						수 정 안					
구분	시설	기준	사 용 료		비 고	구분	시설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평일	주말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다목적실(공유부엌)	오전·오후·야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다목적실(공유부엌)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좌동				1일	10,000원	좌동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오전·오후·야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1일	10,000원		
한옥글방	회의실	2시간	10,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한옥글방	회의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 참고사항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다만, 1일은 10:00~22:00로 한다.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

※ 참고사항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 다만, 1일은 10:00~19:00로 한다.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29.(여성가족과-12986)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6. 9.(문화예술과-9926)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5.(기획예산실-8578)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순천시 공고 제2020-1431호)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생활문화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생활문화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19:00
2. 주말 : 10:00~18:00

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순위 사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생활문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5. 그 밖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 및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행사 및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문화시설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장비 또는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창작예술촌	창작예술촌1호	순천시 옥천길 19(영동)	
	김혜순한복공방 (창작예술촌2호)	순천시 옥천길 26(영동)	
	조강훈아트스튜디오 (창작예술촌3호)	순천시 금곡길 22(행동)	
	장안창작마당 (창작예술촌4호)	순천시 금곡길 43(금곡동)	
서문안내소	다목적실, 마을방송국, 안내소, 작은도서관, 유아놀이방	순천시 호남길 52(행동)	
한 옥 글 방		순천시 금곡길 28(행동)	

[별표2]

##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주 말	
창작예술촌1호	전 시 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2호 (김혜순 한복공방)	전 시 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3호 (조강훈아트 스튜디오)	전 시 실	1일	10,000원	좌 동	
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	다목적실 (공유부엌)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장안여인숙	1일 숙박	10,000원	좌 동	
서 문 안 내 소	다목적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한옥글방	회 의 실	오전·오후	5,000원	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1일	10,000원		

※ 참고사항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 다만, 1일은 10:00~19:00로 한다.  
[오전(10:00~14:00) / 오후(14:00~18:00)]
2. 전시실 사용기간 : 전시기간과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철거일 포함

[별표3]

##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국가나 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 반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순천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순천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4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627,500	-525,500	-525,500	-525,500	-525,500	-525,500
세입(a)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세출(b)	2,65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2,65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65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창작예술촌,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마을방송국, 마을안내소  
관리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 산출액(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창작예술촌	서 문 안 내 소			
			다목적실	도서관	방송국	안내소
산출액	530,000	450,000	35,000	15,000	15,000	15,000

○ 산출내역(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창작예술촌	서 문 안 내 소			
		다목적실	도서관	방송국	안내소
계	450,000	35,000	15,000	15,000	15,000
사업비	172,800	10,000	7,466	3,600	-
노무비	177,349	18,000	6,534	10,400	12,400
경비	5,220	750	1,000	1,000	2,600
제세비	94,631	6,250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과장 신순옥(☎ 749-6788)

문화예술팀장 이선화(☎ 749-6789)

#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정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257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서정진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14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3조의6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애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 순천경찰서 교통관련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학과 교수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전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78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나안수 의원

## 1. 개정이유

- 관내 패류양식 어업인의 고령화와 소유 면허지분의 확대에 의한 어업권자의 작업편의 개선 및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를 위하여 어업권자별 양식장 관리선의 지정 척수를 확대하여 우리 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관리선의 척수 확대 (안 제3조 제1호)

- (현 행) 1인 1척, 2개 이상의 어업권 소유시 1척
- (개정안) 1인 2척 이하, 2개를 초과하는 어업권 소유시 2척 이하  
(다만, 양식장 면적이 10헥타 미만인 경우 1척)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인 1척으로” 를 “1인 2척 이하로” 하고 “2개 이상의” 를 “2개를 초과하는” 으로 하며, “1척에 한하여” 를 “2척 이하로” 하여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업권자의 양식장 면적이 10헥타 미만인 경우 1척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양식어장의 관리선의 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관리선의 척수) ----- -----.
1. 어업권자별 1인 1척으로 지정하며, 1인의 어업권자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척에 한하여 지정한다. (단서 신설)	1. ----- 1인 2척 이하로 ----- ----- 2개를 초과하는 ----- ----- 2척 이하로 ----- ----- <u>다만 어업권자의 양식장 면적이 10헥타 미만인 경우 1척으로 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개정이유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건축문화와 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 2. 주요내용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변경 등(안 제3조~제5조)
  -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건축 현황,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도시경관 향상 및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 지역의 건축발전 및 건축문화 기반 구축, 기술개발, 선도사업 등
    - 우수 건축물 및 한옥의 보존 및 진흥
    - 건축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등
-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 건축 정책의 심의·시행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주요 기능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 및 건축문화 기반조성에 대한 사항 등
-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사항(안 제12조~제16조)
  - 총괄건축가(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촉 및 해촉, 보수, 업무원칙 등

##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1. ~ 2020. 7.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0. 6. 16. (여성가족과-121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6. 5.(건축과-2452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5.(기획예산실-857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7. 1.(순천시 공고 제2019-2258호)

#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순천시보에 확정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교육과 홍보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 제1호·제7호·제9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건축정책위원회

**제6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

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2.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4.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기획업무 참여
2. 건축 및 도시의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3.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자문

4. 건축 및 도시 관련 심의·심사 참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 위촉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제16조(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년 평균 지원물량을 추계하여 산정)

○ 전문가 근무수당(주1회 기준) : 76,925,000원

- 산출내역 : 369,831원/일 × 4인 × 52일 ≒ 76,925,000원

○ 기타운영 경비 : 29,000,000원

- 일반 운영비 :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홍보물 제작 : 3,000,000×3종 = 9,000,000원
- 민간전문가 여비 등 150,000×4인×52일 ≒ 8,008,000원
- 집행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기준(협회) 및 여비 별도 지급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건축과	과장	장순모	(☎ 749-6202)
		건축물관리팀장	박성희	(☎ 749-6385)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개정이유

- 건축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문 정비(안 제7조)
- 순천만보호를 위해 생태계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정비(안 제18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및 횟수 정비(안 제35조, 별표 3)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30. ~ 7. 20.)결과 : 의견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29.(92020A-전남 순천 065)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9.(기획예산실-87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30.(순천시 공고 제2020-1392호)
- 순천지역건축사회 의견수렴(의견 없음) : 2020. 6. 30.(건축과-28560호)
- 건축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20. 7. 24.(건축과-32916호)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6조의 제목 “(건축허가수수료)” 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한다.

제32조제5항 “영 제 86조 제2항 제2호 나목” 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를 “1회로 한다” 로 한다.

별표 3 중 “85제곱미터이하” 를 “60제곱미터 이하” 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p>(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p> <p>제33조(공개공지확보) ① (생략)</p> <p>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b>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b></p> <p>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p> <p>① ~ ② (생략)</p> <p>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b>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b></p> <p>[별표 3]</p> <p><b>이행강제금 산정기준</b>(제35조 관련)</p> <p>1. 연면적 <b>85제곱미터</b>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반건축물</th> <th>해당법조문 (건축법)</th> <th>이행강제금의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생</td> <td></td> <td>략</td> </tr> </tbody> </table> <p>2.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반건축물</th> <th>해당법조문 (건축법)</th> <th>이행강제금의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생</td> <td></td> <td>략</td> </tr> </tbody> </table>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생		략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생		략	<p>-----.</p> <p>제33조(공개공지확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4.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b>1회로 한다.</b></p> <p>[별표 3]</p> <p><b>이행강제금 산정기준</b>(제35조 관련)</p> <p>1. --- <b>60제곱미터 이하</b>-----</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반건축물</th> <th>해당법조문 (건축법)</th> <th>이행강제금의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td> <td></td> <td>같음</td> </tr> </tbody> </table> <p>2.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반건축물</th> <th>해당법조문 (건축법)</th> <th>이행강제금의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td> <td></td> <td>같음</td> </tr> </tbody> </table>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현행과		같음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현행과		같음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생		략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생		략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현행과		같음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현행과		같음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8. 19.

## 1. 제정이유

- 순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전라남도 조례 제정현황 (2020. 7월 현재)

제정 완료(15개)	제정 미완료(2개)
(도) 전라남도 (1) (시) 목포시, 광양시 (2) (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보성군 (12)	(시) 여수시, <b>순천시</b> (2)

\* 전라남도 포함 지자체 17개 중 15개 제정 완료

##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경비지원, 지원대상,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중복 지원 금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4. 제정조례안 : 별첨

## 5. 관련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39조

##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7. 1. ~ 7.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29.(여성가족과-1298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22.(기획예산실-835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30.(순천시 공고 제2020-1389호)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화재·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순천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로 한다.

1. 순천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순천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순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 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순천시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처리절차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제4조(경비지원)
  -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에 대하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세입(a)						
세출(b)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시 비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4,000,000원 / 1년

○ 지급시기 : 수난구조비용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출기초

▪ 유류대 및 인건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준용

☞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적용[별표2]

※ 순천시 민간해양구조대 현황 : 총4명('20. 7월 현재)

- 유류대 :  $8\text{시간} \times 205\text{마력} \times 0.33\text{리터} \times 1,260\text{원} \times 4\text{척} = 2,727,600\text{원}$

- 인건비 :  $58,900 \times 4\text{명} \times 2\text{회} = 471,200\text{원}$

\* 8시간 이하 58,900원, 초과근무 1시간당 9,276원

▪ 장비 및 물품 동원비 : 현재 선례가 없어 추산치 적용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보전과 과장 허성실(☎ 749-6051)

해양수산팀장 류승민(☎ 749-6086)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0.>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시간(활동시간은 입항·출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활동시간 8시간 이하: 기본수당

※ 기본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1,769,000/30=58,900원)**

2) 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 기본수당 + 초과수당

※ 초과수당: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9,276원)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유류비

1) 지급기준: 유류소모량(ℓ) × 해당 월 유가

※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한다.

※ 유가: 어선의 경우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하고, 어선이 아닌 경우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BA유 또는 BB유의 경우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가) 경유 및 BA유 (BB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 = 활동시간 × 마력 × 시간 · 마력당 소요량

※ 시간 · 마력당 소요량

구 분	시간 · 마력당 소요량
경유 사용선박	0.166리터/(시간 · 마력)
BA유(BB유) 사용선박	0.170리터/(시간 · 마력)

(나) 휘발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 = 활동시간 × 마력 × 0.33리터/(시간 · 마력)

※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